

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9일

국토교통부 장관

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

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류 제출시기 합리화, 공모형 신기술 도입, 신기술관리위원회 기능조정 등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('22.8)의 정책이행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신기술 지정 신청서류 제출시기 개선(안 제5조)

- 현장 시공실적 등에 대한 서류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나.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(안 제9조, 제12조 개정)

-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변경

다. 공모형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(안 제4조의2 신설, 제2조, 제3조제1항, 제9조제2항 개정)

- 공모형 신기술에 대한 용어 정의, 추진절차 및 발주청에서 신기술 부합 여부 검토를 위한 근거 및 서식 마련

라. 신기술관리위원회 기능 조정(안 제19조의2 개정, 제19조의3 신설)

- 기존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을 개편하고, 신기술 범위조정 등의 기존 역할은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(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고시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-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보내실 곳

- (우편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
- (온라인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

○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술정책과(☎ 044-201-3558, Fax 044-201-5551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